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2017. 1. 2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월 10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월 11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제6조 제1항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6. 주요 개정 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제11호)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있는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는 붙여 쓰기 적용
(안 제6조 제1항 제4호)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모범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제정·시행으로 자치법규의 통일된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특별시의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으며,

이에,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할 경우,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연간 약526천원으로 미미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수입 감소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 할 예정임.

따라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우리 구 재정책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1.7, 2015.10.8>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2010.7.15, 2011.7.28>
2. 전자납세자 :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3.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0.1.7>
4.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신설 2010.1.7>

제3조(지원)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7>

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 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7>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